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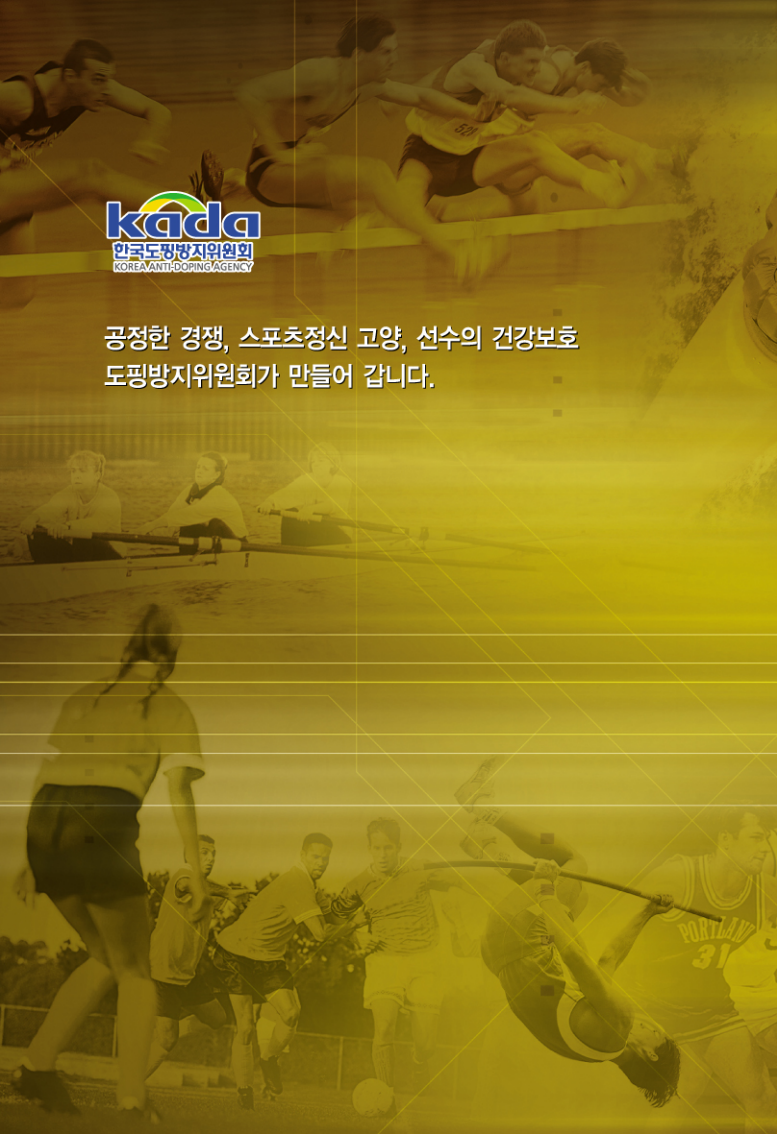
2007
반도핑안내서
www.kada-ad.or.kr

2007 반도핑안내서





공정한 경쟁, 스포츠정신 고양, 선수의 건강보호
도핑방지위원회가 만들어 갑니다.



2007년도 반도핑안내서

1. 도핑이란 무엇일까요?	2
2. 선수 및 지도자 여러분, 이것만은 명심하세요!	5
3. 도핑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Q&A)	8
4. 금지되는 약물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12
5.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이란 무엇인가요?	14
6. 도핑검사는 언제 하나요?	18
7. 도핑검사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19
8.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금지약물목록	26

* 부록 : 1. 치료목적사용면책 양식

2. 2007년도 금지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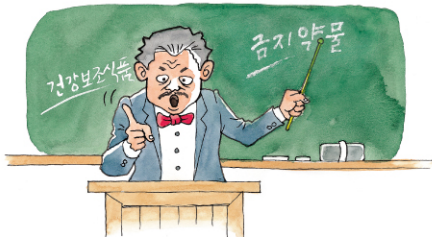
1

도핑이란 무엇일까요?

도핑(Doping)이란 운동경기에서 체력을 극도로 발휘시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호르몬제, 흥분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때 사용되는 약물을 도프(Dope)라고 합니다. 원래는 경주마에 투여하는 약물을 도프라고 하였는데 인간의 스포츠계에서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말해, 도핑이란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약물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경기자의 건강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페어플레이 정신에 위배되는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도핑은 세계반도핑규약(WADA Code)에 의하여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금지목록에 명시된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곧 도핑에 해당됩니다.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되면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경기규칙과 마찬가지로 반도핑규칙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핑을 함으로써 경기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수의 신체는 극도로 피로해지고 약물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의학적인 이유 이외에도 인간 본래의 능력으로 겨루어야 할 경기에서 약물의 힘을 이용하려는 그릇된 생각에 대한 도의적인 비판이 대두되어 도핑 금지는 경기에 있어 중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각종 경기에서 금지약물 및 방법을 검출하는 검사가 실시되는데, 이것을 **도핑검사(Doping Test)**, **도핑관리(Doping Control)**라고 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캐나다의 육상선수 벤 존슨이 약물복용으로 입상이 박탈되었습니다. 1994년 월드컵축구대회에서는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가 에페드린 복용으로 실격한 바 있고,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는 육상 남자 1600m 계주 금메달리스트인 제롬 영이 금지약물 복용으로 금메달을 박탈당한 바 있습니다.

도핑의 역사

1960년에 덴마크의 사이클 선수인 Kurt Jensen이 암페타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고, 이어 1967년에 Tour de France에서 Tommy Simpson이 역시 암페타민 복용으로 사망하면서 올림픽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금지약물 리스트가 만들어졌으며 1968년부터 올림픽 경기에서 본격적인 약물검사가 시행되게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에는 1985년에 도핑컨트롤센터가 설립되어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게임에서 약물검사를 수행하였다. 이때, 벤 존슨이 스테로이드 복용이 적발되어 금메달을 박탈당한 사례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99년에는 **세계반도핑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 WADA)**가 창설되어 그동안 IOC가 수행해오던 세계반도핑활동을 넘겨받았으며, 2003년에는 모든 국제경기연맹과 73개국 정부가 세계반도핑규약(WADA Code)을 수용하여 세계반도핑활동의 총괄전담기구로 자리매김 되었다.

아울러, 세계반도핑규약은 2005년 10월19일 제22차 UNESCO 정기총회에서 **스포츠반도핑국제협약**으로 채택되고 세계 45개 국가가 비준하여 2007년2월1일부터는 **국제법으로써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 세계 반도핑 프로그램 (World Anti-Doping Program)

세계 반도핑 프로그램의 목적은 도핑 없는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도핑의 색출, 저지 및 예방에 관하여 국내·국제적으로 조화되고 조정된, 효과적인 반도핑 프로그램을 보장하는데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단계 : 세계반도핑규약(WADA Code)
- 제2단계 :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
- 제3단계 : 실행모델, 지침서, 서식(Model Rules, Guidelines, Forms)

● 반도핑규칙 위반 (Anti-Doping Rule Violations)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 중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시료(소변, 혈액 등)에 금지약물, 그 대사물 또는 표지자의 존재.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시도
- 시료 채취의 거부, 불응, 또는 회피
- 선수의 소재지 정보요구에 대한 불응 등 선수확보관련 요구조건의 위반
- 도핑관리과정에 대한 방해 및 방해 시도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소지 또는 밀거래



2 선수 및 지도자 여러분, 반드시 이것만은 명심하세요!



● 선수 여러분, 잠깐만!

선수로서 유념하여야 할 가장 간단한 원칙은 금지목록(Prohibited List)에 있는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거나, 진찰을 받거나, 약을 사거나, 처방전을 받을 때 금지목록을 지참하고 항상 참고 하십시오.

만약 어떤 약이 의심스러우면 금지목록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주치의, 의무위원과 그 약물을 복용해도 좋은지 여부를 상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금지된 것일지도 모르는 약이 있다면 복용하지 마십시오. 소위 보조식품과 약초제품(한약, 생약 등)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금지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지약물인지 모르고 복용하였거나, 금지물질이 포함된 약품을 모르고 복용했을 경우에도 여러분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전 점검이 꼭 필요하며 그러므로써, 여러분은 건강하고 정직하게 됩니다.

아울러, 세계반도핑규정(World Anti-Doping Code)에는 심각한 부상과 질병으로 부득이하게 금지약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국제경기연맹 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전승인 없이 금지약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치료목적이라 하더라도 반도핑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됨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지도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스포츠에서 금지하는 약물과 방법 대부분은 단기적으로 선수의 스피드, 근력과 체력을 강화시킬 수는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약물을 사용하여 선수의 경기력 향상이 있을 지라도 그 향상이 반드시 약물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선수는 정당한 노력보다는 약물에 의지하려는 심리적 의존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스포츠에서 도핑을 추방하여 선수가 공정한 경기를 할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코치와 감독, 주치의, 행정임원 그리고 선수는 하나의 팀을 이뤄 공동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코치·감독은 선수 가족을 제외하고는 누구보다도 선수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므로 도핑방지에 있어 코치·감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합니다.

스포츠가 계속 발전하려면 모두가 도핑을 비난하는 환경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런 도핑에 대한 비난은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신체적인 면을 아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선수의 복지를 잘 살피주는 것도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약물사용을 허용하거나 부추기는 것은 그 책임을 훼손하는 것이며 그런 활동에 연루된 지도자는 더 이상 설자리가 없으며, 반도핑규정에 의해 징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물사용으로 인한 분명한 건강상 위험과 도덕적, 윤리적 측면을 차치하고라도, 약물을 복용한 일부 선수로 인해 정당하게 노력한 선수의 기록이 의심받는다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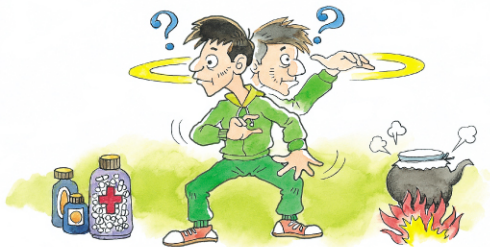
3 도핑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Q & A)

Q 한약, 영양제, 비타민 및 기타 건강보조식품은 복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부분의 약제는 문제가 없으나, 동양선수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한약 및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위의 약제나 건강식품 등은 단일 성분의 정제된 약과는 달리 수많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어 양성반응을 유발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성분표에 열거된 내용과 실제 성분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동양 선수들이 많이 복용하는 한약 등에는 어떠한 성분이 포함되어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선수들은 그 성분이 명확치 않은 약제나 건강식품 등은 함부로 복용하지 않아야 하며, 복용을 원하는 경우 함유 성분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열거된 한약재는 금지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성분 :** 고우난낭, 고정다, 구골수피, 구골엽, 다수근, 다엽, 마전자, 마황, 마황근, 반하, 백약자, 백굴채, 심엽황화염, 아편, 앵속, 앵속각, 여송과, 여춘화과실, 오동자, 우신, 인노, 자하거, 적마황, 중마황, 초마황



Q 커피, 차 등에 함유된 카페인도 문제없을까요?

A 카페인은 금지약물은 아니지만 과량으로 복용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보고 대상약물입니다. 커피, 차, 감기약, 자양강장제, 다이어트식품 등에 함유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시판되는 약에도 금지약물은 함유되어 있나요?

A 시판되는 종합감기약과 비염 등 내복약은 에페드린, 페닐프로판놀아민 등 금지약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갈근탕 등 일부 한방약에는 마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마황에는 금지약물인 에페드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장제 일부에는 금지약물인 메틸테스토스테론(Methyltestosterone)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영양보조식품으로 시판되고 있는 DHEA와 안드로스텐다이온(Androstenedione)은 금지약물입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시판되고 있는 약 중에 코가 막혔을 때 흡입하는 약 성분 속에서도 금지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판되는 약과 영양보조식품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여 의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검사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A-시료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되면, 청문회에 소환되고, 그 청문회에서 본인이 A-시료 분석결과를 인정하면 양성판정이 되어 제제가 가해집니다. 만일 본인이 A-시료 분석결과에 불복하여 B-시료 분석을 요구하고, 분석결과 A-시료와 B-시료 모두에 이상소견이 있으면 양성판정이 되어 제제가 가해집니다. 제재를 결정하기 전에,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제재는 메달박탈, 경기기록 말소, 자격정지 등이 있습니다.

Q 감기에 걸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증상에 따라, 금지약물이 아닌 약이 있으므로, 의사로부터 적절한 처방을 받기 바랍니다. 선수촌에 입촌 중인 선수는 선수촌 의사/팀닥터의 처방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판 종합 감기약의 복용은 특별히 조심해야 하며, 선수촌 이외의 약은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수촌 의무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선수는 소속 주치의나 의무분과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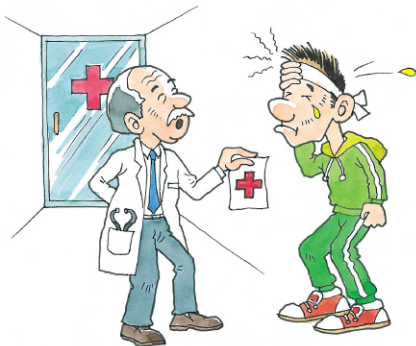
Q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A 치료를 위한 약에도 금지약물이 있습니다.

- 천식 내복약, 흡입약
- 통풍 치료를 위한 프로베네시드
- 고혈압 치료를 위한 β 차단제, 이뇨제
- 위염, 구토치료를 위한 치료제 등

처방된 약에 대해서는 주치의로부터 설명을 듣고 약물명을 기록해 두기 바랍니다. 일반의사가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 도핑 관련 스포츠 닥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금지물질 이외의 약으로도 충분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금지약물 사용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에는 사전에 팀 닥터 및 의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아무리 치료목적이라 하더라도 국제경기연맹이나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사전승인없이 금지약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도핑규칙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4 금지되는 약물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금지되는 약물과 방법은 세계반도핑기구가 발표하는 금지목록(Prohibited List)에 규정되어 있는데 ① 상시(경기기간중 및 경기기간외) 금지되는 약물 및 방법, ② 경기기간중 금지되는 약물 및 방법, ③ 특정경기에서 금지되는 약물, ④ 특정약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상시 금지되는 약물 및 방법 (경기기간중 및 경기기간외)

● 금지약물 (Prohibited Substances)

- 동화작용제
- 호르몬제와 관련약물
- 베타-2 작용제
- 항에스트로겐성물질
- 이뇨제 및 은폐제

● 금지방법 (Prohibited Methods)

- 산소 운반능력 강화
- 도핑검사의 화학적, 물리적 조작
- 유전자 도핑

● 경기기간중 금지되는 약물 및 방법

● 금지약물 (Prohibited Substances)

- 동화작용제
- 호르몬제와 관련약물
- 베타-2 작용제
- 항에스트로겐성물질
- 이뇨제 및 은폐제
- 흥분제

- 마약류

- 카나비노이드
- 부신피질호르몬

● 금지방법 (Prohibited Methods)

- 산소 운반능력 강화
- 도핑검사의 화학적, 물리적 조작
- 유전자 도핑

5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이란 무엇인가요?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선수들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특정한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수가 질병치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약물이 금지목록에 포함된 약물이라면,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을 통해 금지약물의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의 심사·승인을 위해서 국제경기연맹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의사들로 구성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인 수준의 선수 및 국제경기대회에 참가 예정인 선수는 소속 국제경기연맹의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에 대회개최 21일전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선수를 제외한 국내 수준의 선수들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에 대회개최 21일전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적합한 기구에만 제출해야 하며, 중복해서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승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약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경험이 있는 경우
- 금지약물의 치료목적 사용으로 경기력 향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 금지약물 사용 이외에 적절한 대체약물이 없을 경우

Q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A 치료목적사용면책은 약식 치료목적사용면책(ATUE)과 표준 치료목적사용면책(Standard TUE)으로 나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식 치료목적사용면책(ATUE)

1. 부신피질호르몬(비전신성 투약일 경우)과 흡입 베타-2 작용제(formotel, salbutamol, salmeterol, terbutaline) 약물에만 적용됩니다.
2. 약식 치료목적사용면책(ATUE)신청서(부록 1 참조)는 완전한 서류가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ATUE)에 접수되면 선수에게 바로 통지하며 불완전한 신청서류는 신청자에게 되돌려집니다.
3. 선수는 통지를 받는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표준 치료목적사용면책(Standard TUE)

1. 약식 치료목적사용면책(ATUE) 적용 약물을 제외한 금지목록에 포함된 모든 약물이나 방법에 적용됩니다.
2. 표준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서(부록 1 참조)를 제출하고,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의 심사를 받습니다.
3. 공식승인을 받으면 승인조건에 따라 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응급상황이라면 우선 치료를 시작하고 이후에 승인을 받아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승인 하에 금지약물을 사용하고 있을 때 도핑검사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도핑검사서를 작성할 때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승인 하에 사용하고 있는 약물명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승인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사본을 제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승인서를 반드시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지약물 검출결과를 검사실에서 보고받으면,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유효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승인조건(약품명, 사용방법, 사용량, 사용빈도 등)을 준수하였는지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선수의 검사결과는 음성으로 기록됩니다.

Q 거부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본인 비용 부담으로 재심사를 의뢰 할 수 있습니다. 보내야할 서류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 시 첨부한 모든 서류와 위원회 판정결과 등입니다. 세계반도핑기구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는 추가 의료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반도핑기구의 재검토 과정은 절대로 치료목적사용면책 거부 판정을 보류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세계반도핑기구의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 금지약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반도핑기구가 원심을 뒤집고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승인 판정을 하면 국제경기연맹이나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최종판정을 위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고, 반대로, 재검토 판정이나 거부 판정을 하면 신청한 선수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세계반도핑기구는 국제경기연맹이나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승인판정을 직권으로 재심사해서 이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선수나 국제경기연맹 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TUE)과 관련된 정보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국제경기연맹, 세계반도핑기구에 문의하거나 관련 홈페이지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부록 1 참조]



6

도핑검사는 언제 하나요.

도핑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각종 대회기간 동안 실시되는 「경기기간중(In-Competition) 검사」와 대회와 관계없이 수시로 시행되는 「경기기간외(Out-of-Competition)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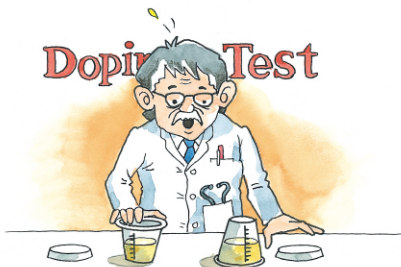
1999년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발족된 이후, 「경기기간외 검사(Out-of-Competition)」가 부쩍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선수 여러분들도 이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도핑검사 통지도 사전에 통지 없이 시행하는 「사전미통지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리 테스트(Pre - Test)」라 하여 경기 시작전, 선수촌에서 시료채취를 하거나 불시에 숙소를 방문하여 금지약물 등을 수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핑검사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불시에 도핑검사가 실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수 여러분의 방문 앞의 노크소리가 도핑검사 통지일 수 있습니다. 선수들에게는 다소 불만스러운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스포츠에 있어서 도핑을 추방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로 받아들여야 할 사항입니다.



7 도핑검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 검사대상 선수 선정

검사대상 선수는 국제경기연맹,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등 반도핑기구가 지정한 선정방침에 따라 선정합니다. 선정방침은 무작위 선정, 가중치 선정, 표적검사 등이 있습니다. 경기기간외 검사(Out-of-Competition)의 경우에는 훈련 중인 선수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선정하게 됩니다.

도핑검사가 처음일지라도 두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고 수준의 선수들은 자주 도핑검사를 요청받게 되는데 만일 여러분이 도핑검사를 요청받는다면 경력이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 검사대상 선수에게 통지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선수는 통지서를 통해서 선정사실을 통지받고, 통지받

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지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신분확인을 위하여 ID카드 등 신분증을 요구받게 됩니다.

통지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거나 이를 회피하는 것도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해당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도핑관리실에 도착

통지를 받은 선수는 통지서에 지정된 시간(보통 1시간 이내) 내에 도핑관리실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도핑관리실에 도착하여 시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속 경기 출전, 시상식 참가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도핑검사관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도핑관리실로 출두하지 않으면 반도핑규칙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핑검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장 심한 징계(1차 위반 시 2년간 자격정지, 2차 위반 시 영구 자격박탈)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직하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도핑검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필요가 있을까요.

● 도핑검사관 또는 도핑검사동반인의 동반

통지를 받은 선수는 도핑관리실에 도착하기까지 도핑검사관 또는 도핑검사동반인에 의하여 동반되고, 감시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도핑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도핑관리실에 도착할 때 까지는 소변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선수가 원하는 경우에는 통역이나 선수대리인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선수대리인은 코치, 팀 닥터 등 선수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중에서 정하면 됩니다. 미성년 선수나 장애인선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도핑관리실 도착

도핑관리실에 도착하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선수 본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일단, 도핑관리실에 도착하면 시료채취가 완료될 때까지 도핑관리실을 떠날 수 없습니다. 후속 경기 출전, 시상식 참석 등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핑검사관의 허락을 받아 잠시 도핑관리실을 떠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도핑검사관 또는 도핑검사동반인의 동반과 감시가 계속됩니다.

시료 제공

신분 확인이 끝난 후 도핑검사관이 선수에게 시료(소변)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을 것입니다. 만약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도핑관리실에 마련된 음료수(밀봉 완제품)를 마셔도 됩니다. 소변을 바로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은 종종 발생하므로 초조해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료 제공이 가능할 때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대기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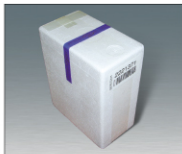
준비가 되면, 도핑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3개이상의 채취용기(그림1 참조)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성인 도핑검사관 또는 입회도핑검사동반인과 동행하여 채취실로 들어가 소변을 채취용기에 담으면 됩니다.



〈그림1〉 소변 채취용기



〈그림2〉 소변이 채워진 소변 채취용기 최소한 75mL까지 소변을 채취한다



〈그림3〉 Bereg-Kit 공인시료병

채취실에는 선수와 도핑검사관 또는 도핑검사동반인 외에는 아무도 동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선수는 선수가 원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채취실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시료 채취시 도핑검사관 또는 도핑검사동반인은 시료가 해당선수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선수에게 배 중앙에서부터 무릎까지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팔소매를 걷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수는 75mL 이상의 소변을 제공하여야 합니다(그림2 참조). 만약 선수가 필요한 양의 소변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추가하여 필요한 채취량을 채워야 합니다.

시료 분류

필요한 량의 소변시료가 채취되면, 도핑검사관이 3개이상의 시료병 키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것입니다. 선수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밀봉된 키트 인지를 확인하고, A-시료병과 B-시료병, 뚜껑, 키트 외부에 표시된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림4〉 개봉하기전의 시료병 A(붉은색 라벨)와 B (파란색 라벨)



〈그림5〉 시료병에 채워진 상태 A병에는 붉은색 라벨의 하단 부분까지 채우면 50mL가 되며 B병은 파란색 라벨 하단까지 채우면 25mL가 된다.



〈그림6〉 VersaPak 공인시료병

도핑검사관 입회하에 선수는 먼저 B-시료병에 25mL의 소변시료를 담고, A-시료병에는 50mL의 소변시료를 채운 다음, 뚜껑을 닫고 거꾸로 세워 새지 않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도핑검사관은 소변시료가 검사실이 분석하기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취용기에 남은 소변으로 비중측정이라는 간단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결과 소변시료가 부적합(비중이 시약스틱 사용시 1.010, 굴절계 사용시 1.005 미만일 경우)한 것으로 나타나면 계속해서 2차 시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시료 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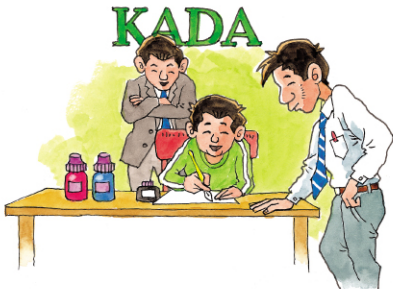
시료가 두 개의 병에 나누어지고 밀봉되면 도핑검사관이 두 개의 병을 외부용기에 넣어 봉인하게 되는데, 이 때 선수는 제공한 시료가 담겨있는 두 개의 병과 두개의 병을 넣는 외부용기의 번호가 일치하는지, 정확하게 밀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도핑관리서에 서명

시료봉인이 끝나면, 도핑검사관은 시료채취과정에 이의가 없는지 확인한 후 도핑검사서의 선수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선수는 서명하기 전에 도핑관리양식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성명, 시료병 번호 등이 정확한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명이 끝나면 선수는 선수용 도핑관리서 사본 1부를 받아서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도핑관리양식 Doping Control Form



1. 선수정보 ATHLETE INFORMATION

성 FAMILY NAME 이름 GIVEN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종목/세부종목 SPORT/DISCIPLINE

주소 ADDRESS

신분확인여부 ATHLETE ID PROVIDED ☐ 예 ☐ 아니요 ☐ 코치성명 (필요한 경우) COACH'S NAME (IF APPLICABLE)

2. 통지 NOTIFICATION

검사유형 TYPE OF TEST REQUEST ☐ 소변 ☐ 혈액 ☐ 국가 도시 시간

나는 통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통지를 읽었으며 시료제출에 동의한다.
I HEREBY ACKNOWLEDGE THAT I HAVE RECEIVED AND READ THIS NOTICE AND I CONSENT TO PROVIDE SAMPLES AS REQUESTED

선수서명 ATHLETE'S SIGNATURE

경기기간중 검사 IN-COMPETITION TEST 해당없음 N/A ☐ 대회명칭 EVENT

도핑검사관/도핑검사동반인 성명 도착시간 REPORT NO LATER THAN

도핑검사관/도핑검사동반인 서명

3. 분석정보 INFORMATION FOR ANALYSIS

경기장명 SPORT PREPARATION 종목/세부종목 SPORT/DISCIPLINE 검사날짜 DATE OF TEST 성별 GENDER 남 ☐ 여 ☐

소변 URINE ☐ A/B 시간

소변시료코드번호 URINE SAMPLE CODE NUMBER

소변량 VOL(ml) pH 비중 SPECIFIC GRAVITY

추가시료 ADDITIONAL SAMPLE 해당없음 N/A ☐ 시간

추가소변시료코드번호 URINE SAMPLE CODE NUMBER

소변량 VOL(ml) pH 비중 SPECIFIC GRAVITY

경기기간중 ☐ 경기기간내 ☐

도핑관리실 도착시간 ARRIVAL TIME AT DOPING STATION

부분시료 PARTIAL SAMPLE 시간

부분시료번호 PARTIAL SAMPLE NUMBER

해당없음 N/A ☐ 소변량 VOL(ml)

약/보충제 확인 : 비타민, 미네랄 등을 포함하여 지난 7일간 복용한 약/보충제가 있으면 기록하십시오.
DECLARATION OF MEDICATIONS/SUPPLEMENT : LIST ANY MEDICATIONS OR SUPPLEMENTS, INCLUDING VITAMINS AND MINERALS, TAKEN OVER THE LAST 7 DAYS

추가보고양식 SUPPLEMENTARY REPORT FORM ☐ 해당없음 N/A ☐ 번호 NUMBER

4. 검사과정확인 CONFIRMATION OF PROCEDURE FOR URINE TESTING

추가성명 할 사항이 있으면 적으시오. 필요하다면 추가보고양식을 사용하십시오. ANY COMMENTS SHOULD BE NOTED HERE, IF NECESSARY
COMMENT ON SUPPLEMENTARY REPORT FORM

추가보고양식 SUPPLEMENTARY REPORT FORM ☐ 해당없음 N/A ☐ 번호 NUMBER

나는 시료채취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확인한다. I CERTIFY THAT SAMPLE COLLECTION WAS CONDUCTED WITH THE RELEVANT PROCEDURES
소변시료채취확인인 URINE SAMPLE WITNESS 제2시료 SECOND SAMPLE 소변시료채취확인인 URINE SAMPLE WITNESS

성명 서명 해당없음 N/A ☐ 성명 서명

선수대인 ATHLETE REPRESENTATIVE
해당없음 N/A ☐ 성명 NAME 직위 POSITION 서명 SIGNATURE

도핑검사관 DOPING CONTROL OFFICER
성명 서명 날짜 DATE 종료시간 TIME OF COMPLETION

이 양식에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틀림없음을 서약한다. 시료채취는 적절한 시료채취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확인한다. 세계반도핑
규약에 따라 검사실 결과 및 제제지 등의 도핑관리와 관계된 모든 정보를 관련단체와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다. I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I HAVE GIVEN ON THIS DOCUMENT IS CORRECT. I DECLARE THAT SAMPLE COLLECTION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CEDURES FOR
SAMPLE COLLECTION. I ACCEPT THAT ALL INFORMATION RELATED TO DOPING CONTROL SHALL BE SHARED WITH RELEVANT BODIES IN ACCORDANCE WITH THE WORLD
ANTI-DOPING CODE.

선수서명

ORIGINAL-KADA-WHITE
COPY 1-AUTHORIZED COLLECTION AGENCY-GREEN
COPY 2-ATHLETE-PINK
COPY 3-LABORATORY-BLUE
COPY 4-ATHLETE/NOTIFICATION-YELLOW

KOREA ANTI-DOPING AGENCY
SEOUL, KOREA
TEL : 82-2-401-1622
FAX : 82-2-419-0220

〈그림7〉 도핑관리양식

8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금지약물 (예시)

아래의 금지약물 목록은 국내의 모든 금지약물을 예시한 것이 아닙니다. 본 목록에 없는 약물이라도 금지성분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 51. 동화작용제 (ANABOLIC AGENTS)

1.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류(Anabolic Androgenic Steroids)

a.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

Danazol : 다노실캡셀(한국유나이티드제약), 단조쿠린캡셀(태준제약), 영풍다나졸(영풍제약), 한서다나졸(한서제약)

Methyltestosterone : 테스토정(삼일제약), 강정빙 정(현창제약), 금보곽 캡셀(경남제약), 금보정 캡셀(경남제약), 마이크로젠 연고(동성제약), 비정에스정(동양제약), 티슈페론 로오손(삼호제약)

Oxandrolone : 킥커 정(뉴젠팜)

Oxymetholone : 한불옥시메토론 (한불제약), 한서 옥시메토론 (한서제약)

Stanozolol : 스타본 정(영풍제약)

b.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

Androstenedione : 스테론 정 (장우제약)

Testosterone : 앤드로던 패취 (삼양사)

2. 기타 동화작용제

Clenbuterol : 동광 염산 클렌부테롤(동광제약), 벤티실 정 (녹십자 PBM), 소아용 벤티실 시럽(녹십자 PBM), 스피론 시럽 (태준제약), 스피론 정(태준제약), 코오롱 염산 클렌부테롤 시럽(코오롱 제약), 코판 소아용시럽(현대약품), 코판 정(현대약품), 크렌볼 시럽(동구제약), 크론톨 정(한국위더스), 가베롤 시럽(동신제약), 네오부론 정(진양제약), 디아코론 정(대화제약), 뚜루 시럽 (녹십자 PBM), 록소브론 정 (하원제약), 록솔씨 시럽(삼아약품), 록솔씨 정(삼아약품), 뮤코벤실 시럽(동광제약), 뮤코투신 시럽 (영일약품), 뮤코투신 정 (영일약품), 바로콜 정(셀라트팜코리아), 발소롤 정(한유유통), 부크렌 정(대신제약), 브레날 정(대한뉴팜), 브레날 정(케이엠에스 제약), 브로킨 정(삼익 제약), 브론코반 시럽 (고려제약), 브론코반 정(고려제약), 비브락스 시럽(대우약품), 비브락스 정(대우약품), 비코본 정(영풍제약), 솔반 시럽(국제약품), 솔반정(국제약품), 슈프레 정(초당약품), 시나탑 정 (삼공제약), 아셀 정(한국 코러스제약), 아스렌 정(삼진제약), 안비테놀 정(한서제약), 암부론 코마 정 (삼희약품), 암부타렌 정(한서제약), 암부테롤 시럽(바이넥스), 암브레톨 정 (알파제약), 암프로콜 시럽(한미약품), 암프로콜 정(한미약품), 암브크린 정 (한국파비스), 암스펜 시럽(한국슈넬제약), 유니콜정 (한국유니온 제약), 지미 록솔 시럽(대웅제약), 지브론 시럽(동화약품), 지브론 정(동화약품), 카벤시럽 (종근당), 코니톱 시럽(코오롱제약), 코판엠 시럽(현대약품), 크란톨시럽(한국 이텍스), 크란톨 정(한국이텍스), 크레나스 시럽(신풍제약), 크레나스 정(신풍제약), 크렌콜 시럽(신일제약), 크렌콜 정(신일제약), 클리오시럽(안국약품), 타브론 정 (한국마이크로제약), 파마롤정 (한국파마), 팩토롤정 (수도약품)

● S2. 호르몬관련 약물

Growth hormone(hGH) : 그로트로핀-투 주 4IU (동아제약), 유트로핀 주 4IU(엘지생명과학)

53. 베타-2 작용제 (BETA-2 AGONISTS)

Salbutamol : 건일 살부타몰 정 (건일제약), 벤타몰 서방캡셀(삼천당 제약), 벤토린 에보할러(글락소스미스클라인), 벤토린 에보할러(글락소스미스클라인), 벤토린 흡입액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볼맥스 서방정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부광 살부타몰 정 (부광약품), 살부트론 서방캡셀 (메디카코리아), 신일 살부타몰 정 (신일제약)

54. 항에스트로겐성물질 (AGENTS WITH ANTI-OESTROGENIC ACTIVITY)

Tamoxifen : 광동 타목시펜(광동제약), 놀바텍스 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놀바텍스-디 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우 마목시펜 정(대우약품), 대화 타목시펜 정 (대화제약), 목사펜 정(태준에약), 타모프렉스 정 (명지약품), 타목센 정(한국유나이티드제), 한불 구연산타목시펜 정(한불제약), 한서 타목시펜 정(한서제약)

Cyclofenil : 영풍 구연산클로미펜 정 (영풍제약)

55. 이뇨제 및 은폐제 (DIURETICS AND OTHER MASKING AGENTS)

이뇨제류 Diuretics :

Acetazolamide : 다이아막스정(동신제약), 줄라딘주(극동제약)

Amiloride : 라미드정(동광제약), 모듀로티정(장우제약), 아미로정(건일제약)

Furosemide : 후세드현탁액(극동제약), 라식스주(한독약품/아벤티스파마), 후릭스정(일양약품), 다이릭스정(신안제약), 라식스정(한독약품/아벤티스파마), 라섹드정(영풍제약), 라시딘정(국제약품)

Indapamide : 후루덱스정(한국세르비에), 나트릭스서방정(영진약품) 파니드

정(휴온스), 인다팜정(일양약품), 다피드정(진양제약), 나트릭스정(영진약품)
Spironolactone : 구주스피로락톤정(구주제약), 스피텐정(한영제약), 스피락
 톤정(대원제약), 스피로자이드정(명인제약), 코러스스피로노락톤정(한국코
 러스제약), 원진스피로락톤정(원진제약), 유니락톤정(한국유나이티드제약),
 알락톤정(파마시아코리아)

Hydrochlorothiazide : 다이크로질정(유한양행), 미카르디스플러스정(한국베
 링거인켈하임), 베타자이드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 스피로자이드정(명인제
 약), 라이드정(동광제약), 모듀로틱정(장우제약), 아미로정(건일제약), 알다
 타자이드정(파마시아코리아), 스피텐정(한영제약)

Triamterene : 남미트리암테렌정(남미제약), 신테란정(조아제약), 한성트리
 암테렌정(한성제약)

● S6. 흥분제류 (STIMULANTS)

Ephedrine

ephedrine HCl 단일제 : 대원 에페드린 주 40mg/ml(대원제약), 제일 염산에
 페드린 주사액 4% 1ml(제일제약)

ephedrine HCl 복합제 : 부로콜 시럽 100ml (한미약품), 슈가펜 정 (에이치
 팜), 씨모펜 정 (에이치팜), 아스토신 정 (인화제약), 오라콜 캡셀 (크라운 제
 약), 지미코프 시럽 100ml (대웅제약), 페드라정 (서울제약), 포스판 정 (경남
 제약)

Methylephedrine

methylephedrine HCl복합제 : 감콜 캡셀(아남제약), 감탁 캡셀(극동제약), 게
 보콜 캡셀(삼진제약), 고틀 캡셀(조선무약), 고폐레 시럽 90ml(국제약품), 기
 치멘 정(대화약품), 고폐레 티엘 에프 캡셀(크라운제약), 나이킨 내복액
 30ml(종근당), 네오메디코푸 정(보령제약), 네오콜캡셀(진양제약), 노바 캡셀

(동광제약), 노바보린 지 캡셀(영풍제약), 노바킹에스 정(동광제약), 노스벤 시럽 1000ml(한일약품), 녹콜 과립 100g(삼익제약), 뉴스탑 연질 캡셀(동구제약), 뉴콜 캡셀(청계제약), 동광 코데논 정(동광제약), 래피콜 시럽 100ml(유한양행), 래피콜 에프 캡셀(유한양행), 라인보 정(신일제약), 록콜 캡셀(에이치팜), 루나벤 캡셀(영일약품), 리노코푸 시럽(한국슈넬제약), 마파람에프 과립(삼익제약), 마파람에프 캡셀(삼익제약), 명콜 에스 캡셀(일동제약), 모드콜드 시럽(종근당), 바로콜 캡셀(태극약품), 베베코프 시럽(일화), 베베코프-에스 시럽 100ml(일화), 베스콜 캡셀(썬라트팜코리아), 베이비콜콜 시럽 120ml(조아제약), 베투신 시럽 30ml(크라운제약), 벤자엠 캡셀(조선무약), 벤자콜 에스 캡셀(신일제약), 부론키 에스 정(본초제약), 브론텍서 캡셀(태평양제약), 비타콜 캡셀(오리엔탈제약), 뽀라솔 시럽 100ml(바이넥스), 사미판 캡셀(삼희약품), 소아용 베리콜 시럽 1000ml(삼천당제약), 소아용 베비콜킹 시럽 100ml(대웅제약), 속콜 에프 캡셀(일양약품), 슈콜민 캡셀(알파제약), 신코프 캡셀(대신제약), 씨스펜 콜드 시럽 100ml(한미약품), 쏘노탈 정(영풍제약), 아나빌-엘 캡셀(서울제약), 아세푸린 연질캡셀(알파제약), 아스마 에취 시럽 100ml(일양약품), 아스마로 캡셀(일양약품), 아스콘 캡셀(제이알팜), 아스타민 캡셀(하나제약), 아스펜탈 캡셀(제이알팜), 아이오브 액 90ml(부광약품0), 아이코코 시럽 60ml(삼아약품), 아트스 캡셀(대우약품), 어린이 판콜 시럽 75ml(동화약품), 에나톡신 정(크라운제약), 에어로민 캡셀(신일제약), 에이콜 캡셀(바이넥스), 에치코프 캡셀(한불제약), 엑스칠 연고 25g(코오롱제약), 엑시콜 캡셀(동양제약), 우노바 캡셀(동광제약), 우진콜 캡셀(경진제약), 웨이콜 캡셀(삼천리제약0), 윈콜 에프 캡셀(한국메디텍제약), 챔프콜드 시럽 75ml(동아제약), 캄보 캡셀(하원제약), 캄피날 정(제이알팜), 캐치콜 에프 시럽 100ml(코오롱제약0), 캐치콜 에프 캡셀(코오롱제약), 케어코프 캡셀(대화제약), 코데나 에스 시럽 500ml(유한양행), 코데나 에스 정(유한양행), 코데날 액 1000ml(삼아약품), 코데날 정(삼아약품)

Methylphenidate

methylphenidate HCl단일제 : 메칠펜 정 10mg(SK제약), 콘서파 OROS 서방정 18mg(한국얀센), 페니드 정 10mg(한인제약)

Modafinil

modafinil 단일제 : 프로비질 정 100mg(중외제약), 프로비질 정 200mg(중외제약)

Pemoline

pemoline단일제 : 파마 페몰린정 18.75mg(한국파마)

Selegiline

selegiline HCl 단일제 : 마오비 정 5mg(초당약품), 유맥스 정 5mg(사노피~신타라보 코리아)

Monitoring drug :

Caffeine

caffeine 단일제 : 하택정(참치약품)

복합제 : 게리톤 정(세화제약), 고푸레 시럽 90ml(국제약품), 코프레 티엘 에프 캡셀(국제약품), 글겐 연질캡셀(영일약품), 나이킨 내복액 30ml(종근당), 나쿨 시럽 90ml(일동제약), 노바콘트 캡셀(동방제약), 노자린 정(삼익제약), 노틸 정(삼익제약), 녹톨 과립 100g(삼익제약), 논업 정(대립제약), 라스팽과립(하원제약), 루나벤 캡셀(영일약품), 리리벤 정(삼익제약), 마파람에프 과립(삼익제약), 멘자펜 정(동성제약), 명랑 산(한국양행), 몬타드 캡셀(한국위더스), 베스쿨 캡셀(셀라트팜코리아), 벤자엠 캡셀(조선무약), 벨라 캡셀(삼희약품), 브론텍 씨 캡셀(태평양제약), 비나클론 연질캡셀(한국마이팜제약), 뽀라솔 시럽 100ml(바이넥스), 사미펜 정(삼희약품), 샤인 정(현창제약), 소

아용비나콜 연결 캡셀(한국위너스), 스페린 캡셀(세화제약), 신코프 캡셀(대신제약), 아듀코 캡셀(하원제약), 아파간 에스 정(신풍제약), 암씨롱 정(동아제약), 암타나 정(한국파비스), 엑세드린 엑스트라 스트랭스 정(한국비엠에스제약), 엑시브 액(광동제약), 엑시콜 캡셀(동양제약), 우노바 캡셀(동광제약), 우노바 캡셀(동광제약), 웨이콜 캡셀(삼천리제약), 이즈펜 정(정우약품공업), 조마 캡셀(본초제약), 진알지 정(제이알팜), 카펠고트 정(한국노바티스), 캄보 캡셀(하원제약), 코이텐 정(신풍제약), 코치람 캡셀(한불제약), 콘작 캡셀(알파제약), 콜비스 캡셀(경남제약), 콜시딘 연결 캡셀(구주제약), 콜아벤 캡셀(한국파비스), 쿨켄 캡셀(롯데제약), 크라렉신 정(크라운제약), 크래밍 정(크라운제약), 키렉신 정(크라운제약), 투베콜 캡셀(영풍제약), 투수콜 연결캡셀(신일제약), 파노바 연결캡셀(영풍제약), 펜잘 에스 정(종근당), 펜프린 정(대한뉴팜), 폰스콜 과립 2.5g(동인당제약), 하벤 투 캡셀(고려제약), 하세린 캡셀(삼보제약), 한페인 정(신일제약), 현창 엔보 캡셀(현창제약)

Phenylephrine

phenylephrine 복합제 : 바이콜 시럽 500ml(동구제약), 바이콜 정(동구제약), 코벤 시럽(대우약품), 콜민-에이 정(영진제약)

phenylephrine HCl 단일제 : 4웨이 속효성 비액 10mg/14.8ml(한국비엠에스제약), 게이어 염산페닐에프린 점안액 10% 100mg/ml 10ml(명지약품), 네오시네프린-포스 점안액 10% 100mg/ml 10ml(아주약품), 미드후린 점안액 2.5% 25mg/ml 5ml(한국알콘), 바쉬앤드롬 염산페닐에프린 점안액 2.5% 25mg/ml 15ml(명지약품), 페네피린 코약 0.5% 5mg/ml 500ml(동광제약), 하나 염산페닐에프린 주1%(하나제약)

phenylephrine HCl 복합제 : 나시트릴 캡셀(크라운제약), 무스콜에프 캡셀(현대약품), 미드린-피 점안제 10ml(태준제약), 씨스펜 나이트 정(한미약품), 코뚜-에이시럽 100ml(코오롱 제약), 코린 시럽 500ml(신일제약), 코미 시럽(코오롱 제약), 코미 정(코오롱 제약), 코비안-에스 시럽 500ml(삼아약품), 코

비안-에스 정(삼아약품), 코오진 정(대유신약), 코타민 시럽 500ml(대원제약), 콜민-에이 시럽(영진약품), 콜민-에이 시럽 500ml(영진약품), 트인 비액 15ml(한림제약), 판쿨 에이 내복액 30ml(동화약품), 푸레파레손 에치 연고 28g(일동제약), 푸레파레손 에치 클링겔 20g(일동제약)

Pseudoephedrine

pseudoephedrine HCl 단일제 : 염산슈도에페드린 정 30mg, 60mg(대우약품), 슈다페드 정 60mg(삼일제약), 슈페린 정 60mg(뉴젠팜), 파마 염산슈도에페드린 정 60mg(한국파마)

pseudoephedrine HCl 복합제 : 가네카 정(크라운제약), 감콜 에프 정(아남제약), 꿈아코 시럽(일화약품), 나이캄 시료 90ml(삼아약품), 테코나민 정(한국파마), 두쿨 캡셀(진양제약), 리노에마이스텔 캡셀(보령제약), 리노콜 정(삼경제약), 마토코 정(보람제약), 맥스콜 정(인바이오넷), 맥시덤 스트렝스 콤트렉스 사이너스 앤 나잘 디켄제스턴트 정(한국비엠에스제약), 메가코 정(명문제약), 메가토프 정(명문제약), 메가콜드 정(명문제약), 명콜 에스 캡셀(일동제약), 모드콜 시럽(종근당), 모드코 정(종근당), 모드코프 정(종근당), 모드콜드 정(종근당), 베스트코 정(셀라트팜코리아), 베아코 정(대웅제약), 베아코프에프 정(대웅제약), 베아콜 정(대웅제약), 베아쿨에프 정(대웅제약), 벤자콜 플러스 시럽 100ml(신일제약), 비노코프 정(대신제약), 뿌레쿨에프 과립(경방신약), 소아용 가네카 시럽 크라운제약, 소아용 가네카시럽 100ml(크라운제약), 소아용 지미콜 시럽 450ml(대웅제약), 슈도민 정(셀라트팜코리아), 스니코 에스 캡셀(유한양행), 써스펜 데이정(한미약품), 써리스 캡셀(한국유씨비제약), 써관 캡셀(한국프라임제약), 아듀코 캡셀(하원제약), 안티노 정(한국파비스), 알레그라 디 정(한국약품/아벤티스 파마), 알카펜 코프 연결캡셀(한국유나이티드제약), 액소도스 정(신일제약), 액타딘 정(동양제약), 액토판 정(서울제약), 액티디엠 엘릭실 500ml(삼일제약), 액티파스 정(태준제약), 액티페린 시럽 1L(영일약품), 액티페린 정(영일약품), 액티펜 정(대우약품), 액티피드 시

럽(삼일제약), 액티피드 시럽 90ml(삼일제약), 액티피드 정(삼일제약), 어린이 판콜 시럽 75ml(동화약품), 에로딘 정(수도약품), 에코리자 정(삼진제약), 에피 트 정(휴온스), 오펜코 정(청계제약), 올판토정(삼성제약), 이지콜 캡셀(광동 제약), 지미콜 액 500ml(대웅제약), 지미콜 정(대웅제약), 지코에스 시럽(일동 제약), 초이스콜 캡셀(대한뉴팜), 캐치콜 에프 시럽 100ml(코오롱제약), 캐치 콜 에프 캡셀(코오롱제약), 코나본 정(진양제약), 코디빌 정(건일제약), 코리 자린 시럽(대우약품), 코리자린 정(대우약품), 코스펜 에이 시럽 500ml(한미 약품), 코삭 정(한미약품), 코엔 에프연질캡셀(수도약품), 코엔코 정(수도약 품), 코엔코프 정(수도약품), 코티렌 캡셀(셀라트팜코리아), 코판토 정(삼성제 약), 코프론 정(영일약품), 콜데이 연질캡셀(근화제약), 콜비단정(롯데제약), 콜스톱 정(한국마이팜제약), 콜키 추정(새한제약), 콜킵 에프 캡셀(대웅제약), 콜투비 캡셀(삼천당제약), 콤비-올 정(신일제약), 콤비-코프 정(신일제약), 콥 트렉스 데이 앤 나이트정(한국비엠에스제약), 타이레놀 콜드 정(한국얀센), 투윈 비 정(경동제약), 투윈 에취 정(경동제약), 판토코프 정(삼성제약), 패스 쿨 정(수도약품), 페리나 정(삼진제약), 푸리드린 정(태창제약), 피니콜 정(삼 공제약), 하디코프 정(광동제약), 하디콜 정(경동제약), 하디콜 정(광동제약), 하벤 스트롱 캡셀(고려제약), 하벤 코 시럽 90ml(고려제약), 하벤 코 정(고려제 약), 하벤 코프 시럽 90ml(고려제약), 하벤 플러스 캡셀(고려제약), 하니콜 에 프 캡셀(한림제약), 화인콜캡셀(신평제약), 화쿨노즈 정(중외제약), 히타겐 캡 셀(한서제약)

● 57. 마약류 (NARCOTICS)

Buprenorphine : 레놀판주사(한림제약)

Morphine : 드럭체크-1듀오(서편탐약국), 구주염산모르핀주(구주제약), 극 동염산모르핀주(극동제약), 명문염산모르핀주사(명문제약), 삼성염산모르핀 주(삼성제약), 염몰핀주(하나제약), 제일염산모르핀주(제일제약), 유프리마

설하정(한국에보트), 극동황산모르핀주(극동제약), 룽핀서방정(일동제약), 본초황산몰핀정(본초제약), 에스몰핀정(성원애드록제약), 엠에스알서방정(하나제약), 엠에스콘틴서방정(한국파마), 옴피에스성방정(명문제약), 황몰핀정(하나제약), 황몰핀좌제(하나제약).

Oxycodone : 옥시콘틴서방정(민디파마).

Pentazocine : 지메곤주(삼성제약), 본초염산펜타조신정(본초제약), 펜탈정(대원제약).

Pethidine : 구주염산페치딘주(구주제약), 극동염산페치딘주(극동제약), 대원염산페치딘주(대원제약), 명문염산페치딘주(명문제약), 삼성염산페치딘주(삼성제약), 제일염산페치딘주(제일제약), 하나염산페치딘주(하나제약).

● Monitoring drug

Codeine : 극동인산코데인정(극동제약), 명문인산코데인정(명문제약), 하나인산코데인정(하나제약), 한샘인산코데인정(한샘제약), 마이폴캡셀(성원애드록제약), 씨아이에이캡셀(명문제약), 코노펜캡셀(하나제약), 타코펜캡셀(신신제약), 프리돌캡셀(극동제약), 디에이치씨 컨티너스 서방정(일양약품), 네오메디코푸정(보령제약), 코데닝정(종근당), 코데밀정(대우약품), 코데송에스정(보람제약), 코데씨시럽(바이넥스), 코데씨정(바이넥스), 코텐스정(메디카코리아), 디코테성방정(하나제약), 동광코데농정(동광제약), 코데원정(대원제약), 코데나에스시럽(유한양행), 코데나에스정(유한양행), 코데날액(삼아약품), 코데날정(삼아약품), 코데본액(본초제약), 코데본정(본초제약), 코데잘정(삼성제약), 코디펜정(한국위더스), 후리코정(신일제약).

● P2. 베타-차단제류 (BETA BLOCKERS)

Atenolol : 아놀렌정(동성제약), 구주아테놀올정(구주제약), 국제아테놀올정(국제약품), 금강아테놀올정(미래약품), 넥스팜아테놀올정(넥스팜코리아), 뉴젠팜아테놀올정(뉴젠팜), 다림아테놀올정(다림양행), 대우아테놀올정(대우약품), 대웅아테놀올정(대웅제약), 동인당아테놀올정(동인당제약), 디텐트정(대원제약), 라테민정(참제약), 로자민정(서울제약), 로테날정(일동제약), 리가드정(두산제약), 마이테놀정(경남제약), 마이팜아테놀올정(한국마이팜제약), 바이테놀정(초당약품), 베타롤정(근화제약), 삼천당아테놀올정(삼천당제약), 슈넬아테놀올정(한국슈넬제약^(주)), 신일아테놀올정(신일제약), 신평아테놀올정(신평제약), 아놀렉스정(셀라트팜코리아), 아놀민정(대림제약), 아놀핀정(보람제약), 아라딘정(한영제약), 아소틴정(한국프라임제약), 아스텐정(한국유나이티드제약), 아테노린정(명인제약), 아테놀정(경동제약), 아텐돌정(대신제약), 아텔민정(세종제약), 아토낙정(대한뉴팜), 안테비놀정(한국유니온제약), 알리코아테놀올정(한국알리코팜), 알파아테놀올정(알파제약), 에이티정(삼진제약), 영진아테놀올정(영진약품), 영풍아톨민정(영풍제약), 장우아테놀올정(장우제약), 카스페롤정(한림제약), 카테올정(한국메디텍제약), 코르시아테놀올정(한국코르스제약), 크라운아테놀올정(크라운제약), 태창아테놀올정(태창제약), 테날정(동광제약), 테놀민정(현대약품), 테모레트정(대화제약), 파스테놀정(환인제약), 하나아테놀올정(하나제약), 하원아테놀올정(하원제약), 한미아테놀올정(한미약품), 한불아테놀올정(한불제약), 한시아테놀올정(한서제약), 한유아테놀올정(한유유통), 현창아테놀올정(현창제약), 대화포텐정(대화제약), 아놀라정(한서제약), 아르탈정(한국프라임제약), 아리돈정(넥스팜코리아), 아크론정(셀라트팜코리아), 아테논정(신일제약), 아테론정(영일약품), 아테민정(한국알리코팜), 아테클로정(뉴젠팜), 아톨민-에스정(영풍제약), 안테비놀에프정(한국유니온제약), 카테올에프정(한국메디텍제약), 코리놀정(한국유나이티드제약), 테노레틱정(현대약품), 테노레틱정(현대약품), 테리돈정(명인제약), 프레난정(장우제약), 프론티오정(동인당제약)

Betaxolol : 베탉정(진양제약), 부광겔론정(부광약품)

Bisoprolol : 콩코르정(마크주식회사)

Carteolol : 미케란정(한국오츠카제약), 미케란점안액 1%, 2% (한국오츠카제약), 참염산카르테올롤점안액 2%(참제약), 카테론점안액 1%, 2%(태준제약), 카테롤점안액(바이넥스), 칼타물점안액 1%, 2%(삼일제약), 칼테점안액 2%(한림제약), 한일염산카르테올롤 점안액 2%(한일약품), 카롤점안액(삼천당제약)

Carvedilol : 딜라트렌정(종근당), 원베를정(대원제약), 카딜란정(경동제약), 카르베를정(한미약품), 카베딜정(이연제약), 카터정(명인제약)

Celiprolol : 셀렉톨정(한독약품/아벤티스파마)

Esmolol : 브레비블록주(제일약품)

Labetalol : 라베신주(명문제약), 베타신주사(하나제약), 트란데이트정(글락소스미스클라인), 트란데이트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Levobunolol : 글라부놀 점안액(이연제약), 바쉬앤드롬염산레보부놀롤 점안액(명지약품), 베타간 점안액 0.5%(삼일제약)

Metoprolol : 베타록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 애보트주식산메토프롤롤주(한국애보트), 푸로롤서방정(명인제약)

Nadolol : 코가드정(한국비엠에스제약)

Propranolol : 인데놀정(동광제약), 인데랄-엘에이캡셀(대웅제약), 인데솔정(영풍제약), 데프라정(한울제약), 프라놀정(대웅제약), 프로놀주(한국유니온제약), 프로닐정(한국유나이티드제약)

Sotalol : 렌티블록정(경풍약품)

Timolol : 나이올롤 점안액 0.5%(한국노바티스), 리스몬TG점안액 0.25%(한미약품), 유니티모 점안액 0.5%(참제약), 쿠시모롤 점안액 0.5%(한불약품), 티마박 점안액 0.5%(삼일제약), 티모글라 점안액 0.5%(이연제약), 티모럭스 점안액 0.25%(유화메디칼), 티모롤 피씨에치 점안액 0.25%(명지약품), 티모코모드 점안액 0.25%(아주약품), 티모프틱 엑스이 점안액 0.25%, 0.5%(한국엠에스디), 티몰렌 점안액 0.25%, 0.5%(태준제약)

[부록 1]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Therapeutic Use Exemption(TUE)

대문자 또는 타자로 작성하십시오/Please complete all sections in capital letters or typing

1. 선수 인적사항/Athletic Information

성 _____ 이 름 : _____
Surname Given Name
여 ☐ 남 ☐ 생년월일 : _____
Female Male Date of Birth(d/m/y)
주 소 : _____ (우편번호)
Address (Postcode)
전화 : 지역 : _____ 직장 : _____ 핸드폰 : _____ 이메일 : _____
Tel. Home Office Mobile E-mail
종 목 : _____ 세부종목/포지션 : _____ 소속 경기단체 : _____
Sport Discipline/Position National Sports Federation
장애자 (장애내용 기함) : _____
If athlete with disability, indicate disability

이전에 TUE 승인 신청 여부 : ☐ 예 ☐ 아니오 ☐		Have you submitted any previous TUE application : ☐ yes ☐ no	
승인요청날짜/When	승인신청기관/To Whom?	승인요청 금지약물/For which substance?	판정결과/Decision

* 이전에 제출한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서 사본을 첨부/Please attach previous TUE/s to this application.

2. 의료정보/Medical information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Diagnosis with sufficient medical information.

* 진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진단 증명자료에는 병력, 검사보고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모든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Evidence confirming the diagnosis must be attached and forwarded with this application. The medical evidence should include a comprehensive medical history and results of all relevant examinations, laboratory investigations and imaging studies. Copies of the original reports or letters should be included when possible. Evidence should be as objective as possible in the clinical circumstances and in the case of non-demonstrable conditions independent supporting medical opinion will assist this application.

금지약물/Prohibited substance : 약물속명/Generic name	1회 사용량/Dose	사용방법/Route	사용빈도/Frequency
1.			
2.			
3.			

예상 치료 기간 : _____
Intended duration of treatment: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물을 처방하려는 임상과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If a permitted medication can be used to treat the medical condition, provide clinical justification for the requested use of the prohibited medication



3. 담당의사 선언/Medical practitioner's declaration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선수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I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treatment is medically appropriate and that the use of alternative medication not on the prohibited list would be unsatisfactory for this condition

성명.....
 Name.....
 전공분야 : 연혁종류.....
 Medical specialty..... qualification.....
 주소 : (우편번호).....
 Address..... (Postcode).....
 전화 : 주택..... 직장..... 핸드폰..... 이메일.....
 Tel. Home..... Office..... Mobile..... E-mail.....
 의사서명 : 날짜 :
 Signature of Medical Practitioner..... Date.....

4. 선수 선언/Athlete's declaration

본인.....는 선수 인적사항이 등록열을 확인하며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목록에 포함된 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세계반도핑규약 규정에 근거하여 WADA 직원, WADA 금지약물사용위원회(TUEC)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구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I.....certify that the information under 1. is accurate and that I am requesting approval to use a Substance or Method from the WADA Prohibited List. I authorize the release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to the Korea Anti-Doping Agency(KADA) as well as to WADA staff, to the WADA TUEC(Therapeutic Use Exemption Committee)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de. I understand that if I ever wish to revoke the right of these organizations to obtain my health information on my behalf, I must notify my medical practitioner and my KADA in writing of that fact.

선수서명 : 날짜 :
 Athlete's Signature..... Date.....
 부모/보호자 서명 : 날짜 :
 Parent's Signature..... Date.....

(선수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선수와 함께 또는 선수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If the athlete is a minor or has a disability preventing him/her to sign this form, a parent or guardian shall sign together with or on behalf of the athlete)

5. 소속 경기단체의 확인/Confirmation of National Sports Federation

이 신청서에 대한 소속 경기단체 의무분과위원장의 확인.....예 ☐ 아니요 ☐
 Has the National Sports Federation Chief Medical Officer.....yes.....no.....
 been notified of this request?
 소속 경기단체 의무분과위원장.....성명.....서명.....
 Name of NSF's Chief Medical Officer.....signature.....

※ 기술학적 사용연력 신청은 반드시 소속 경기단체 의무분과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속 경기단체 의무분과위원장이 확인하지 않은 신청서는 반려될 것이다.
 TUE application need to be filed and signed by the medical officer of the submitting sports federations. incomplete application will be returned without processing by KADA.

KADA 결정/KADA decision (KADA 관계자가 기재)

신청접수번호 : Application No.	신청완료 : Application complete yes ☐ no ☐	승인여부 Decision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KADA 연락처/KADA contact details

주소 : 서울시 용마루 방아동 149-11 나리점 7층 mail:	전화번호 : 02-421-1622 tel.	팩스 : 02-419-0220 Fax	이메일 : admin@kada-ad.or.kr E-mail
---	---------------------------------	-------------------------------	---

서류를原件 구비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서류 복사본을 소지하십시오.
 Please submit the completed form to the KADA and keep a copy for your records.



약식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Abbreviated Therapeutic Use Exemption(ATUE)

대문자 또는 타자로 작성하십시오
Please complete all sections in capital letters or typing

흡입 베타-2 작용제 beta-2 agonists by inhalation	☐	부신피질호르몬제(비 전신성 투약) glucocorticosteroids by non-systemic routes*	☐
--	--------------------------	--	--------------------------

* 경구투약, 좌약, 정맥주사, 근육주사 이외의 다른 경로의 사용. 피부용 부신피질호르몬제는 금지약물이 아니며 TUE 승인을 요하지 않음./All routes other than orally, rectally, intravenously and intramuscularly. Dermatological glucocorticosteroids do not require any TUE

1. 선수인적사항/Athletic Information

성 : _____	이름 : _____
Surname	Given Name
여 ☐ 남 ☐	생년월일 : _____
Female Male	Date of Birth(d/m/y)
주소 : _____	
Address	
전화 : _____	직장 : _____
Tel : _____	Office
핸드폰 : _____	E-mail : _____
Mobile	E-mail
종목 : _____	서부종목/포지션 : _____
Sport	Discipline/Position
소속 경기단체 : _____	
International or National Sport Federation	

이전에 ATUE 또는 TUE 승인 신청 여부 : ☐ 예 ☐ 아니요 ☐			
Have you submitted any previous ATUE or TUE application : yes no			
승인요청날짜/When	승인신청기관/To Whom?	승인요청 금지약물/For which substance?	판결결과/Decision

2. 의학적정보/Medical information

진단 Diagnosis: _____			
약식 금지약물 사용면책 신청서는 ADO 또는 WADA에 의해 언제나 검토될 수 있다. NB Any ATUE may be reviewed at any time, by the ADO and/or WADA			
금지약물/Prohibited substance : 약품속명/ Generic name	1회 사용량 Dose	사용방법 Route	사용빈도 Frequency
1.			
2.			
3.			
예상 치료 기간 Intended duration of treatment (해당란에 기표하십시오) (Please tick appropriate box)	단 1회만 사용 ☐ 응급 사용 ☐ once only emergency 기간(주/월) : _____ or duration (week/month)		



3. 담당의사 선언/Medical practitioner's and athlete's declaration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을 사용은 위 선수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한다./I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treatment is medically appropriate and that the use of alternative medication not on the prohibited list would be unsatisfactory for this condition

성명 :
 Name :
 전공분야 : 면허종류 :
 Medical specialty : qualification :
 주소 :
 Address :
 전화 : 2 직장 : 핸드폰 : E-mail :
 Tel : Home : Office : Mobile : E-mail :
 의사서명 : 날짜 :
 Signature of Medical Practitioner : Date :

4. 선수 선언/Aathlete's declaration

본인.....는 선수 정보가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WADA 금지목록에 포함된 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세계반도핑규약 규정에 근거하여 WADA 직원, WADA 치료목 적사용면제위원회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구에 의해 공개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under 1. is accurate and that I am requesting approval to use a Substance or Method from the WADA Prohibited List. I authorize the release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to the Korea Anti-Doping Agency(KADA) as well as to WADA staff, to the WADA TUEC/Therapeutic Use Exemption Committee)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de. I understand that if I ever wish to revoke the right of these organizations to obtain my health information on my behalf, I must notify my medical practitioner and my KADA in writing of that fact.

선수서명 : 날짜 :
 Athlete's Signature : Date :
 부모/보호자 서명 : 날짜 :
 Parent's Signature : Date :

(선수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선수와 함께 또는 선수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If the athlete is a minor or has a disability preventing him/her to sign this form, a parent or guardian shall sign together with or on behalf of the athlete)

5. 소속 경기단체 확인/Confirmation of National Sports Federation

이 신청서에 대한 소속 경기단체 의무분과위원장의 확인 여부
 Has the National Sports Federation Chief Medical Officer been notified of this request? 예 ☐ 아니요 ☐
 소속 경기단체 의무분과위원장 서명 :
 Name of NSF's Chief Medical Officer :
 Signature :

- ※ 아직 치료목적사용 면허신청을 반드시 소속 경기단체 의무분과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속 경기단체 의무분과위원장이 확인한 지 없음을 신청서는 반려될 것이다.
 ATTUE application need to be filed and signed by the medical officer of the submitting sports federations. Incomplete application will be returned without processing by KADA.

KADA 결정/KADA decision (KADA 관계자가 기재)

신청접수번호 : Application No.	신청완료 : Application complete	예 ☐ 아니요 ☐ yes no	승인여부 Decision	승인 ☐ 불승인 ☐ Approved Not Approved
-----------------------------	--------------------------------	---	------------------	---

KADA 연락처/KADA contact details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4-11 나래빌 2층 mail :	전화번호 : 02-421-1622 tel :	팩스 : 02-419-0220 Fax :	이메일 : admin@kada-ad.or.kr E-mail :
---	-----------------------------	---------------------------	---------------------------------------

서류를 완료해 구비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서류 복사본을 소지하십시오.
 Please submit the completed form to the KADA and keep a copy for your records.

[부록 2]

2007년 금지목록 국제표준(2007.1.1 발효)

상시 금지되는 약물 및 방법 (경기기간중 및 경기기간외)

금 지 약 물 (PROHIBITED SUBSTANCE)

● 51. 동화작용제 (ANABOLIC AGENTS)

1.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Anabolic Androgenic Steroids)

a.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1-androstendiol (5 α -androst-1-ene-3 β , 17 β -diol);1-androstendione (5 α -androst-1-ene-3, 17 β -dione);

bolandiol (19-norandrostenediol);

bolasterone; bodenone; boldione (androsta-1, 4-diene-3, 17-dione);

calusterone; clostebol;

danazol (17 α -ethynyl-17 β -hydroxyandrost-4-eno[2, 3-d]isoxazole);dehydrochlormethyltestosterone (4-chloro-17 β -hydroxy-17 α -methylandrosta-1, 4-dien-3-one)desoxymethyltestosterone (17 α -methyl-5 α -androst-2-en-17 β -ol);drostanolone; ethylestrenole (19-nor-17 α -pregn-4-en-17-ol);

fluoxymesterone; formebolone;

furazabol(17 β -hydroxy-17 α -methyl-5 α -androstan[2, 3-c]-furazan);

gestrinone;

4-hydroxytestosterone (4, 17 β -dihydroxyandrost-4-en-3-one)

mestanolone; mesterolone; metenolone;

methandienone (17 β -hydroxy-17 α -methylandrosta-1, 4-dien-3-one);

methandriol;
 methasterone (2 α , 17 α -dimethyl-5 α -androstane-3-one-17 β -ol)
 methyldienolone (17 β -hydroxy-17 α -methylestra-4, 9-dien-3-one);
 methyl-1-testosterone (17 β -hydroxy-17 α -methyl-5 α -androst-1-en-3-one);
 methylnor testosterone (17 β -hydroxy-17 α -methylestr-4-en-3-one);
 methyltrienolone (17 β -hydroxy-17 α -methylestra-4, 9, 11-trien-3-one);
 methyltestosterone; mibolone; nandrolone;
 19-norandrostenedione (estr-4-en-3, 17-dione);
 norbolone; norclostebol; norethandrolone; oxabolone; oxandrolone;
 oxymeaterone; oxymetholone;
 prostanazol (3, 2-c]pyrazole-5-eticolocholane-17 β -tetrahydropranol);
 quibolone; stanozolol; stenbolone;
 1-testosterone (17 β -hydroxy-5 α -androst-1-en-3-one);
 tetrahydrogestrinone (18 α -homo-pregna-4, 9, 11-trien-17 β -ol-3-one);
 trenbolone; 그리고 화학적 구조 또는 약리적 효과가 비슷한 다른 약물들

b.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 (Endogenous AAS):

androstendiol (androst-5-ene-3 β , 17 β -diol);
 androstenedione (androst-4-ene-3, 17-dione);
 dihydrotestosterone (17 β -hydroxy-5 α -androstan-3-one);
 prasterone (dehydroepiandrosterone, DHEA);
 testosterone; 그리고 아래 대사물(metabolite)과 그 이성체(isomer)들
 5 α -androstane-3 α , 17 α -diol; 5 α -androstane-3 α , 17 β -diol;
 5 α -androstane-3 β , 17 α -diol; 5 α -androstane-3 β , 17 β -diol;
 androst-4-ene-3 α , 17 α -diol; androst-4-ene-3 α , 17 β -diol;
 androst-4-ene-3 β , 17 α -diol; androst-5-ene-3 α , 17 α -diol;
 androst-5-ene-3 α , 17 β -diol; androst-5-ene-3 β , 17 α -diol;
 4-androstenediol (androst-4-ene-3 β , 17 β -diol);
 5-androstenedione (androst-5-ene-3, 17-dione);

epi-dihydrotestosterone; -3 α , hydroxy-5 α -androstan-17-one;
 3 β -hydroxy-5 α -androstan-17-one; 19-norandrosterone;
 19-noretiocholanolone,

2. 기타 동화작용제 (Other Anabolic Ag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lenbuterol, tibolone, zeranol, zilpaterol

● S2. 호르몬과 관련약물 (HORMONES AND RELATED SUBSTANCES)

다음과 같은 약물 및 이와 화학적 구조 또는 생리적 효과가 유사한 기타 약물, 그리고 그 생성요소들은 금지된다.

1. 에리스로포이에틴(Erythropoietin, EPO);
2. 성장호르몬(Growth Hormone, hGH),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Insulin-like Growth Factors, e.g. IGF-1), 메카노 성장인자(Mechano Growth Factors, MGFs)
3. 고나도트로핀(Gonadotrophins, LH, hCG), 남자에게만 금지됨;
4. 인슐린(Insulin);
5.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Corticotrophins).

● S3. 베타-2 작용제 (BETA-2 AGONISTS)

D-이성체, L-이성체를 포함한 모든 베타-2 작용제류는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formoterol, salbutamol, salmeterol, terbutaline 성분은 흡입치료로 사용 시에는 약식 치료목적사용면책(ATUE)을 필요로 한다.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salbutamol 농도가 1000 ng/mL 이상일 때에는 선수가 흡입한 salbutamol이 치료 목적의 사용 결과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정상분석결과로 간주될 것이다.

● S4. 항에스트로겐성물질 (AGENTS WITH ANTI-ESTROGENIC ACTIVITY)

다음의 항에스트로겐 제제는 금지된다.

1. anastrozole, letrozole, aminoglutethimide, exemestane, formestane, testolactone을 포함한 아로마타제 억제제류(Aromatase inhibitors)
2. raloxifene, tamoxifen, toremifene을 포함한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물질류(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s (SERMs))
3. clomiphene, cyclofenil, fulvestrant를 포함한 기타 항에스트로겐제 (anti-estrogenic substances).

● S5. 이뇨제 및 은폐제 (DIURETICS AND OTHER MASKING AGENTS)

은폐제는 금지된다. 은폐제는 다음 약물들을 포함한다.

이뇨제류(Diuretics)*, epitestosterone, probene, alpha-reductase inhibitors (예; finasteride, dutasteride), 혈장확장제 (plasma expanders / 예; albumin, dextran, hydroxyethyl starch), 그리고 생리적 효과가 유사한 기타 약물

이뇨제는 아래 약물을 포함한다.

acetazolamide, amiloride, bumetanide, chlorthalidone, canrenone, chlorthalidone, etacrynic acid, furosemide, indapamide, metolazone, spironolactone, thiazides (예; bendroflumethiazide, chlorothiazide, hydrochlorothiazide), triamterene,

그리고 화학적 구조 또는 생리적 효과가 유사한 다른 약물들 (drospironone은 제외, 금지약물이 아님)

* 만일 선수 소변에 이뇨제와 연계되어 금지약물의 경계치 또는 그 이하 수치의 농도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은 유효하지 않다.

금 지 방 법 (PROHIBITED METHODS)

● M1. 산소 운반능력 강화 (ENHANCEMENT OF OXYGEN TRANSFER)

다음 사항은 금지된다.

1. 자가 조직, 동종 또는 이종혈액 및 적혈구 제제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혈액도핑.
2. 불소치환화합물(perfluorochemicals), efaproxiral(RSR13), 그리고 변형 헤모글로빈 제품들(예 : 헤모글로빈을 재료로 한 혈액 대체제, 마이크로캡슐로 된 헤모글로빈 제품)등을 포함한 인위적인 산소 섭취 및 운반능력 향상 제품의 사용.

● M2. 화학적, 물리적 조작 (CHEMICAL AND PHYSICAL MANIPULATION)

1. 도핑검사와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시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여기에는 도뇨관 삽입, 대리 소변 또는 소변 바꾸기 등이 포함된다.
2. 합법적인 의학적 처치가 아닌 정맥주사는 금지된다.

● M3. 유전자 도핑 (GENE DOPING)

치료 목적이 아닌,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세포, 유전자, 유전인자 사용 및 유전자 형질 변경 등은 금지된다.

경기기간 중 금지하는 약물 및 방법
(SUBSTANCES AND METHODS PROHIBITED IN-COMPETITION)

위에 규정된 S1부터 S5, M1부터 M3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약물들이 경기 중 금지된다.

S6. 흥분제 (STIMULANTS)

국소성 이미다졸 유도체와 2007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포함된 흥분제를 제외한 모든 흥분제류(D- & L- 광학異性體 포함)는 금지된다.

흥분제 종류는 다음과 같다.

Adrafinil, adrenaline**, amfepramone, amiphenazole, amphetamine, amphetaminil, benzphetamine, benzylpiperazine, bromantan, cathine***, clobenzorex, cocaine, cropropamide, crotetamide, cyclazodone, dimethylamphetamine, ephedrine****, etamivan, etilamphetamine, etilefrine, famprofazone, fenbutrazate, fencamfamin, fencamine, fenetylline, fenfluramine, fenproporex, furfenorex, heptaminol, isomethheptene, Ievmethamfetamine, meclofenoxate, mefenorex, mephentermine, mesocarb, methamphetamine(D-), methylenedioxyamphetamine, 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p-methylamphetamine, methylephedrine****, methylphenidate, modafinil, nikethamide, norfenefrine, norfenfluramine, octopamine, ortetamine, oxilofrine, parahydroxyamphetamine, pemoline, pentetrazol, phendimetrazine, phenmetrazine, phenpromethamine, phentermine, 4-phenylpiracetam(carphedon), prolintane, propylhexedrine, selegiline, sibutramine, strychnine, tuaminiheptane 그리고 이러한 약물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갖고 있거나 생리적 영향을 미치는 약물

- * 2007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포함된 다음 약물들(bupropion, caffeine, phenylephrine, phenylpropanolamine, pipradol, pseudoephedrine, synephrine)은 금지약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 ** 국소마취나 국소투약(예:코, 눈)과 관련되어 사용된 adrenaline은 금지되지 않는다.
- *** Cathine은 소변 1 ml 당 5마이크로그램 이상일 경우 금지된다.
- **** 에페드린과 메틸에페드린은 소변 1 ml당 10마이크로그램 이상일 경우 금지된다.

57. 마약류 (NARCOTICS)

다음의 마약류들은 금지된다.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pentazocine, pethidine

58. 카나비노이드 (CANNABINOIDS)

카나비노이드류(해시시, 마리화나 등)은 금지된다.

59. 부신피질호르몬 (GLUCOCORTICOSTEROID)

경구 복용, 좌약, 정맥주사, 근육주사 등으로 투여하는 모든 부신피질호르몬은 금지된다. 이들의 사용은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승인을 필요로 한다.

다른 경로로의 처치(관절내, 관절주위, 힘줄주위, 경막외, 피내주사 및 흡입)도 약식 치료목적사용면책(ATUE)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온삼투요법(iontophoresis)/음성영동법(phonophoresis)을 포함한 경피적, 귀, 코, 눈, 구강, 잇몸 및 항문주변 질환을 위한 국소제제는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정 스포츠에서 금지되는 약물
(SUBSTANCES PROHIBITED IN PARTICULAR SPORTS)

● P1. 알코올 (ALCOHOL)

알코올은 다음 종목에서 경기 중에만 금지된다. 검사는 호흡 또는 혈액분석을 통틀어 시행된다. 각 종목의 도핑 위반 알코올 농도 경계치는 팔호 안과 같다.

- 항공스포츠(국제항공스포츠연맹) (0,20 g/L)
- 양궁(국제양궁연맹) (0,10 g/L)
- Automobile(국제자동차연맹) (0,10 g/L)
- Boules(국제보울연맹) IPC bowls (0,10 g/L)
- 가라데(국제가라데연맹) (0,10 g/L)
- 근대5종(국제근대5종연맹) (0,10g/L)
사격종목은 훈련 중 금지
- 모터사이클(국제모터사이클연맹) (0,10 g/L)
- 모터보트(국제모터보트연맹) (0,30 g/L)

● P2. 베타차단제류 (BETA-BLOCKERS)

다른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베타차단제는 다음 종목에서 경기 중에만 금지된다.

- 항공스포츠 (국제항공스포츠연맹)

- 양궁 (국제양궁연맹) / 경기 기간 외에도 금지
- Automobile(국제자동차연맹)
- 당구 (국제당구연맹)
- 봅슬레이 (국제봅슬레이연맹)
- Boules(국제보울연맹)
- 브릿지 (국제브릿지게임연맹)
- 컬링 (국제컬링연맹)
- 체조 (국제체조연맹)
- 모터싸이클 (국제모터싸이클연맹)
- 근대오종 (국제근대5종연맹) / 사격종목은 훈련 중 금지
- 볼링(Nine-pin) (국제볼링연맹)
- 요트 (국제요트연맹) / 시합경주만 적용
- 사격 (국제사격연맹) / 경기 기간 외에도 적용
- 스키 / 스노보드 (국제스키연맹) in ski jumping, freestyle aerials/halfpipe and snowboard halfpipe/big air
- 레슬링 (국제레슬링연맹)

베타차단제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들로만 한정짓지 않는다.

acebutolol, alprenolol, atenolol, betaxolol,
bisoprolol, bunolol, cateolol, carvedilol,
celiprolol, esmolol, labetalol, levobunolol,
metipranolol, metoprolol, nadolol,
oxprenolol, pindolol, propranolol,
sotalol, timolol



특 정 약 물 *
(SPECIFIED SUBSTANCES)

특정약물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1000 ng/mL을 넘는 salbutamol(free plus glucuronide)을 제외한 모든 흡입 B-2촉진제와 clenbuterol
- Probenecid;
- Cathine, cropropamide, crotetamide, ephedrine, etamivan, famprofazone, heptaminol, isometheptene, levmethamfetamine, meclofenoxate, p-methylamphetamine, methylephedrine, nikethamide, norfenefrine, octopamine, ortetamine, oxilofrine, phenpromethamine, propylhexedrine, selegiline, sibutramine, tuaminoheptane, 그리고 선수가 S6에 규정된 조건의 충족을 입증하는 경우 S6에서 명기하지 아니한 기타 흥분제
- Cannabinoids;
- 모든 부신피질호르몬제;
- 알코올:
- 모든 베타차단제

* 금지목록은, 일반 의약품에 함유되어 있거나 도핑 약물로 남용될 소지가 적은 약물을 사용하여 도핑규정을 본의 아니게 위반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약물을 특정약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특정약물과 관련된 도핑규정 위반은 선수가 그 약물을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제재가 경감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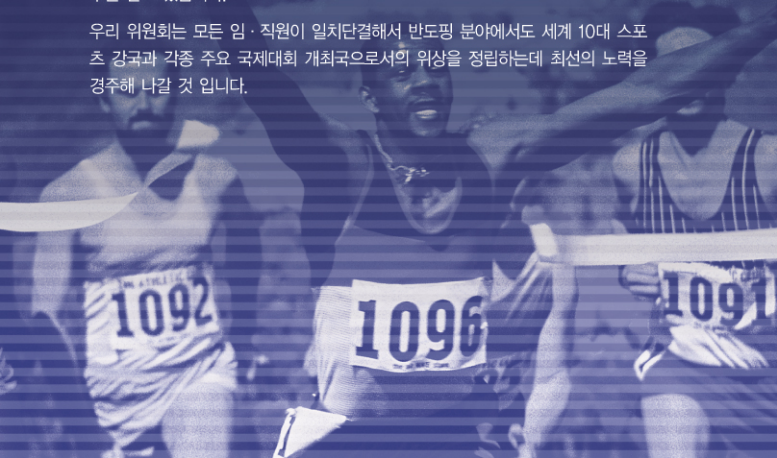
맺은말

스포츠에서의 경기력 향상 목적의 약물복용행위(Doping)는 근절되어야 할 불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선수 건강에 위해가 되며 스포츠 윤리에도 크게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도핑문제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World Anti-Doping Agency)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가입하고 있는 모든 국가와 스포츠기구들은 세계반도핑규약(WADA Code)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개정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8276호, 2007.1.26)의 규정에 의거 최근 발족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세계반도핑규약(WADA Code)의 준수는 물론, 도핑방지 교육과 홍보활동 등 선수의 건강과 권익보호 및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의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모든 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반도핑 분야에서도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과 각종 주요 국제대회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 입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www.kada-ad.or.kr



138-050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49-11 나노빌딩 7F
tel 02. 421. 1622(代) fax 02. 419. 0220